



제43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0호)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6호)
- 김남근의원 소개(청원번호 2200246)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제안(청원)경위, 제안(청원)이유 및 주요내용	1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1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5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6
II. 검토의견	10
1.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 하는 행위’ 추가	10
2.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 및 관련 규정 신설	16
3. 부패행위 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기관 확대 등	25
4. 신고자 책임감면 강화	32
(1) 형의 필요적 감면 관련	34

(2) 징계 또는 행정책임 감면 관련	41
(3) 권익위원회의 의견제출 의무화 관련	42
(4)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관련	44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필요적 감면 의무화 관련	46
5.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48
6.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및 보상금 한도 폐지	51
(1) 이행강제금 한도 상향	53
(2)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 폐지 및 100분의 30 정률 지급 ...	56
7. 기타 사항	61
(1) 고발사건 처리 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61
(2) 신고 준비행위 보호	63
(3) 신분보장조치결정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의무화	65
(4) 협조자 보호 대상 확대	68
(5) 신고자 보호 준용범위 확대	70
(6) 양벌규정 신설	72

I. 제안(청원)경위, 제안(청원)이유 및 주요내용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5. 11. 27.
- 3) 회부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

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나.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아목)

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

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
- 마.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
-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
- 사.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 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 자.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 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 카.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
- 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

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

거.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

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5. 11. 28.
- 3) 회부일 : 2025. 12.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9조).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가. 청원경위

- 1) 청원인 : 한상희
- 2) 소개의원 : 김남근의원
- 3) 접수일 : 2025. 11. 11.
- 3) 회부일 : 2025. 11. 12.

나. 청원의 취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

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나.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아목)

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

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
- 마.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
-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
- 사.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 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 자.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 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 카.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
- 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

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

거.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

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II. 검토의견

- 김남근의원안과 청원은 동일한 내용이며, 김남근의원안과 이견태의원안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 확대’라는 취지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김남근의원안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함.

1.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추가

-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현행과 같음) <u>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u>

	<u>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 는 행위</u>
나. (생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u>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u> 나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라. <u>가목, 나목, 다목</u> ----- ----- -----

□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①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나.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는 부패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괄하게 되면 부패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및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추가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부패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의 유형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현행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제7호를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법 제2조제7호의 “불이익조치”²⁾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그런데,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에 어떠한 행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예컨대 ‘신청인이 일정한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도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는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³⁾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3)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나,⁴⁾ 학설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⁵⁾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패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며, 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억제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⁶⁾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등 참조.

5)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인권과 정의 34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9.; 윤형한, “사전통지의 대상과 흠결의 효과”, 행정판례연구X, 박영사, 2005.

6)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법 제62조의3),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90조제1항·제2항),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90조제1항) 등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달리 지나치게 범위가 넓을 수 있고, 불필요한 신고 증가로 인해 행정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 및 관련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권익위가 해당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과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가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아목,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및 제66조제9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설></u>	<u>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고발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u>

아.·자. (생략)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략)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생략)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

자.·차.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

-----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 -----

-----.

1.·2. (현행과 같음)

3. -----
- 금지(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제

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2조제7호자목 또는 차목-----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7(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8(보복 목적의 형사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소·고발을 각하하여야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u><신 설></u>	<u>한다.</u> <u>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u>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u>⑨ 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u>
---	--

- 현행법은 불이익조치로 “^①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②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 ⑦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⑧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

□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는 불이익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피신고자들은 내부 정보에 대한 신고 행위에 대해 기밀 유출, 무고 등 각종 혐의를 씌워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대다수 사건이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제보자들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음.⁸⁾ 이런 보복성 소송은 공익제보자를 돕는 이들에게까지 제기되기도 하며, 이 경우 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단절시킬 수 있음.⁹⁾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공익신고 이후 나눔의집과 운영진 등으로부터 약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2020년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피신고자로부터 15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당함

9) 조아라, 2026,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참여사회 2026년 01-02월호

○ 현행법에는 신고와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권익위원회 역시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책임감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보복성 소송을 예방하기 힘들며, 책임감면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함.¹⁰⁾

실제로 공익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책임감면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지 않고 종결·취하했으며,¹¹⁾ 제보자가 경험하는 보복성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수집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2022년~2025년 권익위의 책임감면 신청 및 처리 현황 >

(단위 : 명)

연도	접수건수	처리 상세					
		처리건수 소계	인용	인용률(%)	기각	각하	종결·취하
2022	6	3	0	0	0	0	3
2023	5	6	0	0	0	0	6
2024	9	10	1	10	0	0	9
2025	22	17	4	-	0	0	13
합계	43	36	5	-	0	0	31

주: 접수건수는 접수일자 기준, 처리건수는 처리일자 기준으로 집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0) 조아라, 전게서

11) 최근 5년 간 접수건수 대비 평균 인용률 13.8%

□ 이에 개정안은 기존 불이익조치에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의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소, 고발 등을 추가하여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임.

○ 개정안과 같이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의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소·고발 등을 불이익조치에 추가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개정안 제90조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 수 있음.¹²⁾

○ 또한, 안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보복 목적의 소송은 권익위가 해당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익위가 해당 신고를 각하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복소송을 차단하는 실익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12)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김남근의원은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 첫째, ‘압박 또는 보복 목적’의 소 제기 등과 정당한 소 제기를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고발 등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백한 피신고자의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신고자의 신고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기하는 모든 소송, 형사고소나 고발은 외관상 ‘압박 또는 보복’으로 보여질 여지가 존재함.

□ 둘째, 피신청인이 부패신고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보복 성격으로 볼 수 있는 형사고소·고발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보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보복성격이 일부 내포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고소·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복소송을 금지할 필요성은 타당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¹⁴⁾ 형사고소권과의 충돌 우려가 존재하고 보복성격이 일부 내포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고소·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법원행정처는 보복 목적의 소 제기와 정당한 소 제기 구분이 어렵고, 해당 소송 내지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압박 또는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신고자를 상대로 한 정당한 소 제거나 고소·고발 위축 효과를 가져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과다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부패행위 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기관 확대 등

□ 김남근의원안 및 청원은 현재 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지도·감독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확대한 기관에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며,

이건태의원안은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남근의원안·청원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1. (생략) <u><신설></u>	제12조(기능) ----- -----. 1. ~ 21. (현행과 같음) <u>22.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u>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u>위원회에</u> 신고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u> -----. 1. <u>위원회</u> 2. <u>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
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
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
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
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
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3.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

4. 수사기관

5.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의회의원

7.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를 접
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
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
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
무) -----

----- 제5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55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

<u>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u>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이건태 의원안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u>위원회에</u> 신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에게----- -----. 1. <u>위원회</u> 2. <u>국회의원</u> ② <u>국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가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u>
※ 관련 조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2. (생략)

② ~ ⑨ (생략)

③ 국회의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신고 사항(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신고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¹⁵⁾

□ 이에 개정안은 신고 접수기관에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지도·감독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를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되, 접수처 확대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에 대한 권익위의 교육을 강화 또는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부패행위 신고와 달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업, 조사기관, 수사기관, 공공단체,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있음.¹⁶⁾¹⁷⁾

15) 최서영, 2005.11.19., 「참여연대 양성우 “공익제보자에 보복 제소, ‘불이익 조치’로 명시해야”」, 로리더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 현행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성실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분보호조치 등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⁸⁾ 이는 공공기관에 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과 같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보내도록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기관 확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의원이 접수 후 어디까지 확인·조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김남근의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8)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이행강제금),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분보호조치),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및 제66조의2(협조의 요청)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치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 접수기관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담당자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법원행정처는 신고 접수기관을 권익위원회 이외에 다른 기관도 추가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임.

4. 신고자 책임감면 강화

□ 개정안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기관이 신고등과 관련한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 시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시 책임 감면 또는 면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¹⁹⁾

현행	개정안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u>면제할 수 있다.</u>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 ----- <u>면제하여</u> <u>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	③ ----- ----- ----- ----- -----

19) 김남근의원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권익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
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 요구하여야 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
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⑦ 수사기관은 신고등과 관련하
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
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
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
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
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u>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u>
--	---

(1) 형의 필요적 감면(안 제66조제1항) 관련

□ 현행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이와 관련한 진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 그런데 형의 감경·면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사항²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등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²⁾

□ 이에 개정안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 신고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그 입법취지 및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2013도1685(대법원 2013. 6. 13. 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한 형의 감면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

22)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임감면 관련 현황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첫째, 부패행위의 특성상 내부자의 신고, 협조 없이는 적발, 조사 및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가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²³⁾

- 현행법은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의 감면 여부가 조사·수사 등이 완료된 후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조사·수사 등의 과정에서는 실체 규명을 위한 관련 진술이나 자료 제공 등을 협조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²⁴⁾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데 비해, 부패행위의 신고등은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보다는 은폐된 부패행위를 세상에 알려 범죄 예방과 중대한 재난을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범죄의 자수범과 달리 필요적 감면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²⁵⁾

23) “.....부패사건의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대전고등법원 2013. 5. 9. 2012누2403 판결)

24)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5) 김병수,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2022년, p.156

□ 다만, 개정안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발견된 모든 범죄행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취지, 과거 심사 사례, 타 입법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제도를 필요적 감면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사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은폐되기 쉬운 공익침해 사건의 적발·규명, 개선안을 통한 장래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등 신고등으로 인하여 달성하게 되는 공익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되, 이를 책임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태양, 위반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①신고 행위가 부패행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진술”인지, 조사 등에 있어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의 제공”인지 여부 등을 요구하지 않고, ②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또는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①협조행위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②감면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침해한 법익의 정도를 형사책임 감면 여부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둘째, 정부는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범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²⁶⁾’를 의결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이 많아 유보된 바 있으며,

과거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동 개정안 심사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 위원회는 제20대국회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내용²⁷⁾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²⁸⁾하였으나,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29호)’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33호)’이 2011. 7. 12.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어 제출되었으나 제18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됨.

27)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임의적 감면 규정을 일정한 요건* 모두 충족 시에는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 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②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또는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8) 제362회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18. 7. 24.)

동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필요적 감면 시에는 수사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²⁹⁾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형사책임의 필요적 감면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범죄자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필요적 감면대상 요건 강화
필요성, 플리바게닝³⁰⁾으로 인한 거짓 증언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
되었음.³¹⁾³²⁾

□ 셋째, 조사·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자에 대한 형의 감면과 관련
하여, 타 입법례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은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³³⁾하고 있는 반면,

29) 제363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8. 8. 29.)

30) [plea bargaining]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함.
[출처 : 박문각, '사상상식사전']

31) 제364회국회 정무위원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

32) 당시 정부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필요적 감면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건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³⁴⁾)은 진술, 자료 제공 등으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넷째, 권익위 소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³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³⁶⁾」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3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³⁷⁾³⁸⁾」도 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각 법률에 따른 신고자 등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 현황>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책임 환수법	이해충돌 방지법
임의적 감면 (제14조제1항)	임의적 감면 (제66조제1항)	임의적 감면 (제15조제3항)	임의적 감면 (제22조제1항)	임의적 감면 (제20조제3항)
신고자+협조자	신고자+협조자	신고자+협조자	신고자+협조자	신고자+협조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의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며,

법원행정처는 형의 필요적 감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의 신고’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감면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처벌 회피 목적으로 신고행위 악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8) 유사 취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272호, 김현정의원)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근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를 발의함.

(2) 징계 또는 행정책임 감면(안 제66조제3항) 관련

□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요적으로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도 신고자가 본인의 위법행위가 중대한 경우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행위를 악용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법원행정처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권익위원회의 의견제출 의무화(안 제66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현행법 제66조제5항은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시 권익위원회가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임의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66조제5항은 권익위원회가 의견을 필요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6항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법원의 양형 판단 등에 있어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어 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신고자 보호·지원이 강화되어 신고등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례>

연도	구분 (사건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요지
2023	비인가 자격증 불법 발급 의혹 등	공익신고로 추가적인 범죄 피해방지, 피해자 권익

연도	구분 (사건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재판	회복 등에 기여한 점 등 고려 형사처벌 감면 의견
2024	한의원의료법 위반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민사재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개연성 있다고 볼 수 있음
2025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재판	공익신고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기여한 점 등 고려 형사처벌 감면 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재판	공익신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에 기여한 점 등 고려 형사처벌 감면 의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재판	공익신고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공익에 기여한 점 등 고려 형사처벌 감면 의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법원 제출 현황 >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제출 건수			
		합계	형사	행정	민사
2021	법원 요청	-	-	-	-
	권익위(필요하다고 인정)	-	-	-	-
2022	법원 요청	-	-	-	-
	권익위(필요하다고 인정)	-	-	-	-
2023	법원 요청	-	-	-	-
	권익위(필요하다고 인정)	1	1	-	-
2024	법원 요청	1	-	-	1
	권익위(필요하다고 인정)	-	-	-	-
2025	법원 요청	-	-	-	-
	권익위(필요하다고 인정)	4	4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4)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안 제66조제7항) 관련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부패행위의 특성상 내부자의 신고, 협조 없이는 적발, 조사 및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가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66조제7항은 안 제66조제1항의 규정과 충돌될 여지가 있음.

○ 현행법상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신고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안 제66조제1항에서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범죄의 성립 및 기소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
인바,³⁹⁾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됨.

□ 둘째, 필요적 불기소를 예정하는 방식은 검사의 기소재량권 및
책임주의 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기소편의주의⁴⁰⁾를 채택하여 공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필요적 불기소를
요구하는 구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이는 구체적 사건의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를 의무화할 경우 범죄의 중
대성이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결과를 초

39)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1고단946]

▶ (전략) 공익신고자의 위치에 있음은 인정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항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처벌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불이
익조치 등의 금지는 공익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공익
신고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불이익한 조치로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40)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없는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할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사항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경찰청은 단순히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필요적 감면 관련(안 제66조제8항)

- 개정안 제66조제8항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라고 필요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임.

- 다만, 개정안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견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로 인한 손해가 매우 중대하고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것인지, 법원이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경 또는 면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u>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u> 1. <u>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u> 2. <u>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u> 3. <u>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u>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①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②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며, ③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41)

□ 개정안은 위원회가 피신고자 외에 관계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와 관계자에게 출석, 의견진술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권익위원

41)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징계 등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다른 조사기관에 비하여 조사 인력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조사기관과의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권익위에 신고자 대상 사실확인권만 부여한 취지는 감사원 등 조사기관 조사와의 중복 방지, 감사·수사권 침해 예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권익위의 설립목적 및 전반적인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감사원 직무감찰 등과 중복되며 중복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및 보상금 한도 폐지

- 개정안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이후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상향(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하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며 보상금을 정률(30%)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6제1항 및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 ----- ----- -----5천 만원 이하----- -----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	② ----- ----- ----- 제21조의2제2항 · 제3항 · 제5항 및 제6항----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생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
른 손해는 제외한다)

(2) -----

-----.이 경우 보
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
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
의 30으로(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은 정하지 아니한다)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

– 52 –

(1) 이행강제금 한도 상향

□ 개정안의 이행강제금 상향은 이행강제금을 현행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이행력을 높여 신고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국민 권익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임.

다만,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목적,⁴²⁾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도 우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타 법률 이행강제금 사례 >

법 률	대상 행위	이행강제금 상한액수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1억원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미충족	1억원

42) 이행강제금은 정액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목적물의 가액(주식의 경우 장부가액, 건축물 등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경우 별도의 목적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하였음.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살균제 관련 정보 미제공	1억원
장애인등 편의법	편의시설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3천만원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미이행	2천만원
도로법	도로점용 후 원상회복 미이행	1천만원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5백만원

□ 한편, 개정안 제62조의6제2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 외에 동 조 제6항⁴³⁾을 추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임.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은 제21조의2제4항에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의2 제5항은 기존의 제4항이 이동한 것으로,

4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제62조의6제3항에 같은 조문이 있으므로 준용할 필요가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1)>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u>3천만원</u>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 ----- ----- ----- <u>5천만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u>2회</u> 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u>부과·징수</u> 할 수 있다.	③ ----- ----- <u>3회</u> ----- ----- ----- <u>부과·징수하</u> <u>여야 한다.</u>
<신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⑥ ----- <u>제5항</u> ----- ----- ----- -----.

- 개정안은 제21조의2제4항을 준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입법할 경우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② ----- ----- ----- 제21조의2 제2항·제3항· <u>제5항</u> 및 제6항----- -. ----- ----- -----.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② ----- ----- ----- 제21조의2 제2항·제3항· <u>제4항</u> 및 제6항----- -. ----- ----- -----.

(2)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 폐지 및 100분의 30 정률 지급

- ☐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비율은 최저 4%에서 최고 30%까지 구간별로 규정하고 있음.⁴⁴⁾

44)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산정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산 정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다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삭제한 바 있음.

- 2016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건으로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부고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함.

□ 개정안은 ①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이 없는 「공익신고자 보호법」⁴⁵⁾과 동일하게 지급한도액을 폐지하고,

②보상금 지급비율을 정률(30%)로 하여 보상금 지급 수준을 상향 하려는 것으로,⁴⁶⁾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보상대상가액"이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거액의 국고 손실을 방지한 신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점과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 다만, 개정안은 과거 심사 사례, 타 입법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제21대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한도액 폐지 뿐만 아니라 보상금 중 과징금 지급비율을 정률
(30%)로 하는 내용도 심사를 하였으나,⁴⁷⁾

①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폐지하기로 한 반면,

②보상금 중 과징금 지급비율을 정률로 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국민적 가치 평가와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은 바 있음.

- 2026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예산은 28억원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⁸⁾과 같이 실제

46) 김남근의원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또한 정률(30%)로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095, 2114524)

4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① 위
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환수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⁴⁹⁾

를」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상금 지급금액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최저 4%에서 최고 30%까지 구간별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보상금 지급비율을 정률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기타 사항

(1) 고발사건 처리 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생략) ⑦ <u>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⑦ <u>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

□ 현행법상 권익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신고자에게는 그 내용과 사유가 공유되지 않아 후속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처분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즉, 사건진행에 대한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자의 사건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고자가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에 어떠한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비하여, 통지를 받게 되면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통보의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바, 법률의 예측가능성·명확성 제고를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⁰⁾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수사기관이 조사·수사결과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50) 김남근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 전부를 통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신고 준비행위 보호

□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고자의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6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한 신고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u>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 ----- ----- <u>경우(부패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u>

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u>이익조치를 받은 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u> 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신고 이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증거 수집 등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 제62조제3항은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⁵¹⁾

안 제62조의2제1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⁵²⁾과 같이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고한 경우’도 보호 대상에

51) 김남근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함하려는 것으로,

신고 준비 단계부터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언론 제보는 공익적 목적의 폭로일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공익성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할 경우 허위 또는 악의적 제보까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성·진실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안 제62조제3항은 언론 제보 등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신고자의 증거인멸 및 수사·조사 방해 등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안 제62조의2제1항은 동의하는 입장임.

(3) 신분보장조치결정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의무화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 -----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u>금지</u>	3. ----- - <u>금지(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u>제</u>	② ----- -----제

<u>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u>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u>2조제7호자목 또는 차목</u>-----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u>
---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⁵³⁾⁵⁴⁾하고 있는데 반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분보장조치 결정 이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의무 규정이 부재함.⁵⁵⁾

-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5항과 동일하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보다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협조자 보호 대상 확대

- ☐ 개정안은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5조).

-
-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의무점검대상인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2년간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 일환으로 법상 의무점검대상은 아닌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변보호조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55) 다만,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이행 여부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점검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5조(협조자 보호) <u>신고와</u> 관련 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 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u>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u> ----- ----- ----- ----- ----- ----- ----- -----.

□ 현행법상 협조자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하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는 협조자로서 보호받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개정안은 보호 대상에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절차에 조력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협조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신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절차에 조력한 사람도 부패행위 적발·예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⁵⁶⁾

(5) 신고자 보호 준용범위 확대

□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 ----- ----- ----- ----- ----- ----- ----- -----.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삭 제>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삭 제>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1. (현행 제3호와 같음)

56) 김남근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을 대표발의하였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u>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u>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2. ----- -----<u>국회·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u>-----.
--	--

□ 현행법상 국회, 법원에서의 증언 시에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나, 지방의회나 법률에 따른 청문회 등은 신고자 보호 규정 준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가 적용되는 증언·진술의 범위를 ‘지방의회’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한 청문회’까지 확대하여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은 기존 법과 동일하게 단서에서 “제58조의2⁵⁷⁾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7)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67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3호를 제1호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안 제67조 본문 단서 중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은 “제58조의2는 제1호의 경우에만 준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신고기관을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지도·감독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할지, 아니면 확대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함할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양벌규정 신설

□ 개정안 제92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⁵⁸⁾와 같이 법을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위반한 당사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⁵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자 보호 강화 목적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동의함.

현행	개정안
<u><신 설></u> ※ 관련 조문 제86조 삭제 <2021. 5. 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의2(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제9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59)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국회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p.796)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110